

학교안전망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 학교보안관 및 CPTED 중심으로 -

이 세 환*

〈요 약〉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와 그 외 지역의 배움터 지킴이 사업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및 주변의 범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학교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준교사급의 학교안전교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학교 안전 CPTED의 법적제정을 통해 학교 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임시방편적인 학교안전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안전대책방안으로 학교안전교사제도와 CPTED의 법적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안전, 학교보안관, 학교안전망, CPTED

* 혜천대학교 경찰경호과 교수 (주저자)

목 차

- | |
|--|
| I. 서 론
II. 이론적 논의
III.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
IV. 학교 안전망의 개선 방안
V. 결 론 |
|--|

I. 서 론

범죄 사회학자(Emile Durkheim 2006:41-42)는 폭력은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아노미가(anomic)가 나타날 때 표출되는 법률 파괴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 유대가 약해지는 곳에서 폭력이 반발한다고 주장하였다. 미셸푸코(Paul Michel Foucault 1995:104)는 어느 사회든지 사물을 나누는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 체계에 타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소유물을 효과적으로 손에 넣기 위하여 수단이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학교에서의 폭력행위는 1900년 이전에도 있었지만 대체로 성장과정 기에 경험하는 의례로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였다.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6년 전 1996년 한 고등학생이 학급 동료들로부터 잔인한 괴롭힘을 당해 법적 소송을 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학교가 연대 배상하라는 선거를 받아 냄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후 해마다 언론과 학계가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 하였으며, 정부는 해결방안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학교폭력 근절대책협의회, 학교담당경찰관제, 학교내상담의활성화 등을 실시하였다 (최중술, 2006:132).

1980년대 일본에서도 이지메라는 학교폭력으로 일본 전역이 들썩인 적이 있으며, 미국은 청소년 범죄 상승률은 성인 범죄 상승률을 앞질러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정책

은 학교폭력에 대한 무관용 정책으로 나타났고 많은 주정부는 이에 근거한 엄벌주의 입법시행하고, 개별학교들도 인적, 환경적, 프로그램, 경찰과 연계를 맺고 학교 안전화를 위한 개혁 하여, 1994년을 정점으로 미국 청소년범죄율과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하강을 하였다 (정재준 2012: 529).

최근 또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선택한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전국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 하면서 우리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12년 경찰청과 교육 과학기술부 등 각 기관에서 수많은 대책이 내 놓고 있지만 특정기관의 문제해결로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상운 2012: 26).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 강력사건, 사고가 매년 발생한다. 범행 장소를 학교 안팎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학교 안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2008년 12월 11일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8세 여학생을 교회 화장실로 납치하여 강간 상해를 한 조두순사건과,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세 여학생 흥기로 협박하여 1km 떨어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사건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박윤기 2012: 28).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와 학교 내·외 주변을 순찰하고 학생을 지도 할 수 있는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 보안관제도, CCTV 설치를 통한 학교 주변의 감시강화 그리고 치안 위험지역에 있는 학교 1000곳을 골라 경비실을 설치하고 출입 자동보안장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실시하였다. 또한 청원경찰을 배치해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으며, 외부로부터 침입으로 학생들에 대한 위협은 언제든지 발생 할 것이다 (김태복 2011: 306). Hall-Long, et al (2001)은 학업은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듯이 학교 안전대책의 성과도 일회성이 아닌 현실과 학교 상황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그 효과를 얻을 것이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다양한 안전대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전 사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이지 않은 실적위주의 형식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안전대책에 대한 재평가 및 개선방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및 유괴, 성폭행 문제는 우리 사회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이므로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

서 협조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의 중제적 해결노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여러 각도에서 학교안전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연구의 목적은 학교 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임시방편적인 학교안전대책이 아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안전 대책방안으로 학교안전교사제도와 CPTED의 법적 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학교안전 및 학교안전망의 개념

1) 학교안전의 개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면서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전문직 교사가 집단으로서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도적 교육을 실시하는 장소, 또는 기관이며, 안전은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위험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고, 그런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뜻한다. 그러므로 학교 안전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 또는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학생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인되어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 할 수 있다(학교안전공제회 2010).

학교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내외에서 안녕과 질서를 침해하는 어떠한 위협적인 요소로부터 보호받아 학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을 정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안전이라는 좁은 의미로 보면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광의적으로 보면 학교생활을 자유롭게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교육권에 따라 학습권과 수업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적·물적 위해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일정한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 안전하게 교육(학습)을 영위할 수 있게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이라는 것은 학교내에서 학생들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학습에 참여하여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활동이라

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김원중 2011:178~179).

2) 학교안전망의 개념

사회안전망은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 정부가 이를 총괄하고 시도, 시군, 학교현장으로 이어지는 조직단계별 체계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김태진 2007:169), 학교안전망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육부, 교육지원청, 경찰, 배움터지킴이, 기계경비, 민간경비, 지역사회, 학부모 등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박윤기 2012: 30).

학교 내에서 수업관련 안전사고 문제는 즉 학교폭력의 유형에서는 언어상 협박, 욕설, 집단따돌림, 돈 또는 물건을 빼앗은 행위, 폭력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학교 외 부인의 학교 침입으로 어린이 대상으로 5대 강력사건인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으로 심각한 학교의 안전사고에 포함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한 사항이 아니며, 사회의 전체의 문제의 관심 사항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이 현실화되고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과 학교, 배움터지킴이 제도 보안, 경찰과 지역사회망의 구상이 정책으로 실현되기 위하여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법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구상하였다 (김태진 2007:189).

학교안전사고를 일반사고 및 강력사고로 나누기도 한다. 일반사고는 학교나 가정 등에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고 주로 치료 가능한 외상으로서 어린이 부모의 안전교육으로서 어느 정도 사고예방을 할 수 있고 어린이의 성장과정에서 미치는 심리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며, 반면에 강력사고는 살인이나, 인질 강도, 유괴,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의한 어린이의 사고 피해 수준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동반하고 사고에 대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이다 (공배완·안향권 2009: 282).

학교안전이란 아동 및 학생이 학교생활 중에서 어떻게 안전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체득시키고 또 장래 사회인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 행동의 소지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말한다. 사고를 미연에 막으려면 인면존중의 윤리를 투철하게 하고 또한 안전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 안전대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학교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건사고를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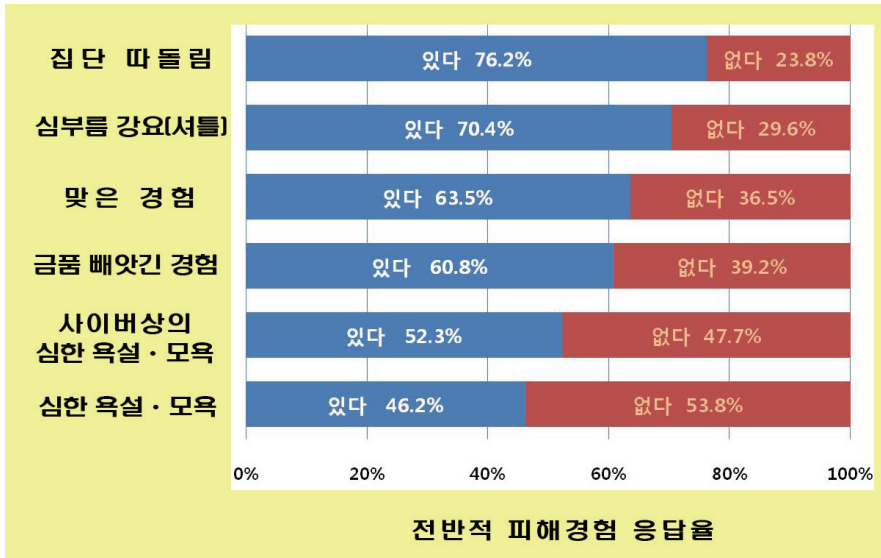
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로 안전대책이란 위협이 없도록 대응하는 방책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이란 위협이 없도록 대응하는 방책이라는 안전대책의 사전적 의미를 근거로 안전망 대책은 사람의 신변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위해 행위나 심리적 압박, 시설물 안전사고 등 간접적인 위해요인을 제거 차단, 외해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사전, 사후의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복 2011:307).

Ⅲ. 학교안전망의 실태 및 문제점

1. 학교안전 학교폭력 현황과 사례

1) 학교안전 학교폭력 현황

경찰청 조사에 2012년 2월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여론 조사하여 학교폭력 피해 경험과 발생정도에 대한 생각의 학교폭력 관련 피해실태와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실제 학교폭력을 경험한 경우 전체 학생의 17.2%가 최근 6개월간 학교폭력 경험이 있었고, 학부모들은 12.2%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는 학부모가(45.4%) 학생(20.3%)보다 25%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에 대한 동조화 분석은 학생들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더 심각하게 느끼는지 분석결과 구타(63.5%), 금품갈취(60.8%) 보다 집단 따돌림(76.2%), 소위 빵셔들 등 심부름 강요(70.4%)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에는 46.2%만이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조: 경찰청브리핑 2012년 3월 8일

〈그림 1〉 학교 폭력 현황

2) 일진 등 불량써클의 사례

첫째, 친구형 인천 “ 일신동 패거리, 경남의‘세븐파’등의 중학생 11명이 학교 및 동네 친구들과끼리 일신동 패거리를 결성, 6개월간 학교 등 23회에 걸쳐 후배들을 폭행 협박하여 27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 하였다. 중학생 8명이 친구들과 세븐파를 결성하여 동급생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5회 걸쳐 집단폭,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학생을 집단폭행하였다.

둘째, 선후배 위계형 서울의 학년 일본들의 갈취 폭행 사건으로 각 학년 일군 선·후배 등 중학생 17명이 약 1년간 후배들을 상대로 70여만원 상당의 금품 갈취, 상납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집단폭행한 사건이다.

셋째, 학교지역 연계형 부산의 학교 짱 모임에서 알게 된 중 고등생 23명이 초중학교 후배들을 상습 폭행 갈취하고, 후배 여학생을 PC방, 모텔 등에서 성폭행 하였다. 또한 남·녀 중고생 174명이 일진 연합 결성, 선배에게는 무조건 복종한다, 싸움 발생 시 동원 보복하기 등 자체 행동 약속을 정하고 후배들에게 ‘줄빠다’등 26회에 걸쳐 폭행하고, 63회 걸쳐 500만원 등 갈취 하였다.

넷째, 성인조폭 연계형 강원 '신종로기회파' 연계로 갈취행위 등의 목적으로 일명 유병태 팀을 결성, 약 3년간 조직폭력배인 '신종로기회파'의 비호를 받으며 동급생 등 상대로 상습 폭력 행사 및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 하였으며, 안성 '파라다이스파' 조직폭력배들이 중·고등학생 일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학생을 상대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그 수익금을 갈취 하였다.

다섯째, 여학생 일진 서울 중학교 동창생 성매매 강요 및 갈취사건으로 여고생 5명이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협박, 스마트폰 채팅으로 성매수 남자를 구해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1년 8개월 간 30회 걸쳐 300만원을 갈취하였다. 그리고 중, 고교 일진 여학생 10명이 약 1년간 피해자들을 공원 등으로 집합시키고 행·협박하여 생일선물 명목 등으로 23회에 걸쳐 45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하고, 후배가 따진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 하였다 (경찰청2012).

2. 학교내의 유괴 현황 및 학교안전의 문제점

1) 아동성폭력 유괴 현황

성폭력과 유괴 등 아동대상 범죄들이 학교시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은 매일 3.2건씩 벌어졌고, 절반 이상이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51.2%)에 일어났다. 이 중 27.6%가 친족 등 아는 사람의 소행이었고, 18세 이하 소년범의 비율도 21.3%나 됐다.

아동 유괴도 아동 성폭력과 같이 정오부터 6시 사이에 56.4%가 집중돼 학교 길 어린이들의 안전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 유괴는 재범률이 66.7%(동종전과 63.4%, 이종전과 36.6%)에 달해 재범 방지가 큰 과제로 떠올랐고, 24.2%가 면식범의 것 이었다 (대검찰청 2011).

2) 학교안전 사건사례 문제점

학교 안전과 관련된 배움터 지킴이와 학교 보안관제도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학교안전 사건의 경위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내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 광주 동부 경찰서는 29일 학교에서

장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박고(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일요일인 지난 22일 오후 2시50분 광주 모 초등학교 교문으로 들어서는 A양(12)을 본관 현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학교본관에는 CCTV 3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현관을 감시하는 CCTV는 없었으며, 경비원(74)이 A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갔을 때 A양은 이미 성폭행을 당했고, 박씨는 달아난 상태였다. 경비원은 A양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내 경찰이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정부는 김길태 조두순 사건에 이어 교내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터지자 전국 5, 843개 초등학교에 CCTV 설치, 24시간 모니터링 인력 배치, 공휴일에도 24시간 학교를 순찰하는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 등 성폭행 예방 대책을 하였다. 아울러 성폭행 범에 대한 권고 형량을 높이고,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늘리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사후양방문식 정부 대책은 일요일 대낮에 교내에서 운동장이 훤히 보이는 본관 현관에서 벌어진 성폭행을 막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CCTV는 무용지물이었고, 일흔을 넘긴 경비원 혼자 학교를 지켰으니 모니터링 용원과 배움터 지킴이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국민일보 2010:31면).

2011년 대낮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수사 하였다. 11일 용산구 A초등학교와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20분 야구 모자를 쓴 점퍼 차림의 한 남자가 쓰레기 차량 출입을 위해 열어 둔 후문을 통해 들어 왔다.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간 범인은 3층 복도를 다니며, B(10)양을 에쁘다며, 볼을 만졌고 이어 4층으로 올라가 C(12)양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이라 복도에 나와 있던 일부 학생들이 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황급히 밖으로 나오는 후문 담을 넘어 달아난 사실이 CCTV에 확인됐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내547개 초등학교에 등·하교 지도와 학교 순찰 등을 위해 배치한 학교 보안관이 있었지만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막지 못하였다. 학교 관계자는 “평상시 9시가 되면 후문을 폐쇄하지만 청소차가 오는 날이라 열어둔 것”이라며 교내 배치된 학교 보안관은 당시 정문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한국일보 2011:11면).

2011년 1월 서울 관악구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몸을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A군은 학교로부터 일정 기

간 출석정지 명령만 받았다. 지난 4월 관악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폭행해 전학을 조치되었고, 지난해 9월엔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의 당직기사가 3학년 여아를 성폭행해 사법 처리돼 학교를 떠났다. 7월엔 동대문의 한 초등학교 통학 버스 기사가 2학년 남아를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해고되었다. 6월엔 양천구 한 중학교에서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해 학교에서 쫓겨났다 (국민일보 2011:11면).

3) 학교공원화사업 현황 및 문제점

학교공원화 사업 현황은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작하였다. 지자체들이 예산을 부담해 학교 담장 허물기를 주도하였다. 1999년 이후 학교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를 개방 하도록 한 교육부의 방침으로 현재 서울에만 578개 초등학교 중 대부분인 540개교가 문을 개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2001년부터 시행한 학교 공원화 사업에 따라 400여 초등학교의 담장마저 허물었다 (한국일보 2010:18).

그러나 담장이 없어지면서 외부인 통제가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방과 후 수업을 기다리던 아이들이 납치 또는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다. 교육당국은 당국은 학교담장을 무조건 허무는 것은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학교시설 안전지침에 울타리 기능을 하는 시설을 꼭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그 수준 여부를 교육부가 학교 평가 기준에 반영해 왔다.

담장을 철거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1, 165곳이며, 이중 2011년 8월 투명펜스 CCTV 설치 등 후속조치를 취한 학교는 제주를 제외한 93곳으로 0.8%에 불과하다. 특히 성폭력 등 위험에 취약한 초등학교의 경우 담장 없는 학교 812곳 가운데 69곳(8.5%)만이 후속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시도별로 보면 강원, 경남, 경북, 대전, 부산, 울산, 충남, 충북 등 8곳은 후속 조치를 취한 학교가 한곳도 없었다. 특히 경북과 대전, 충남은 추가로 16개 학교의 담장을 허물었다. 그 회 지역에서 담장 철거 후 후속 조치를 마련한 학교의 비유론 전북이 119곳 중 2곳(1.7%)으로 가장 낮았고 이어 광주(4%) 전남(4.7%)등의 순이다. 대구는 담장 없는 학교 47곳 중 29곳(61.7%)에 투명펜스 CCTV를 설치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은 21.7%, 경기21.3%, 서울17.8% 등이었다 (김태복 2011:311).

그러나 강호순 사건이나 김기태 사건 등 굵직한 일이 터질 때마다 아동 성폭력

방지 방안으로 등장한 게 CCTV가 설치가 될 만큼 보편화했다. 사건을 계기로 범죄 예방 및 억지수단 으로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실시간으로 화면을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라 단순 녹화기능에 그치고 있어 사후 조치 수단으로 밖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CCTV는 폭행이나 강도 사건 등 사후 검거의 목적이 지 아동 성폭행 등 발생 자체를 막아야할 사건에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다.

IV. 학교안전망 개선 방안

1. 인적 학교보안 안전망

1) 학교보안관 · 배움터지킴이 현황

학교보안관제도와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배움터지킴이가 있으며,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2005년 3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스쿨 폴리스 배치를 위한 7명의 실무협의회와 기획팀이 구성되어 부산에서 시범 운영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다. 스쿨폴리스는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학교경찰로 선발한 후 재교육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전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폭력을 해결 한다(홍서아: 2010:16). 모범적으로 서울시에서는 학교보안관, 그 외 지역은 봉사활동 개념의 배움터지킴이, 대전은 배움터지킴이와 꿈나무지킴이¹⁾가 활동한다. 그러나 업무는 중첩적이며, 지역마다의 명칭이 통합적이지 못하다.

2012년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방식으로 근무여건은 주6일에서 주 5일 근무 및 토요일 격주 휴무 조정과 평일 근무시간을 확대하였다. 학교보안관 2교대 근무조정안을 학교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평일 안전한 점심 휴게시간 제공 및 합동근무시간을 오전 7시30~16시, 오후12시30분~21시 확대하고 토요일 격주 휴무로 근로여건으로 변화 하였다.

1) 대전시 교육청은 초등학교에서만 “꿈나무 지킴이로” 사용

〈표 1〉 서울시 학교보안관 배치대상 운영방식 지원체계

구 분	2011년	2012년
배치대상	국공립초등학교 553개교	국공립초등학교 555개교
운영방식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	학교 직영 운영
지원체계	시→ 학교 → 운영업체	시→ 학교
월급여(1인)	879, 000원	1, 105, 000원 (25%)상승
소요예산	14, 489백만 원	18, 010백만 원

참조: 서울시교육청 2012년 기획 감사교육 정보화

배치대상은 553개교에서 555개교, 운영방식은 권역별 운영업체 위탁에서 학교직영 운영방식으로, 지원체계는 서울시, 학교, 운영업체를 서울시에서 학교로 체계가 변화되었다. 월급 급여는 1인 879, 000원에서 1, 105, 000원 25% 상승하였으며, 총 소요예산은 14, 489백만 원에서 18, 010백만 원으로 변화가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스쿨폴리스(학교지원 경찰관)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지난 1월 발대식을 하였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부터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면서 순찰과 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도 배움터지킴이라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경찰청이 새롭게 스쿨폴리스 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조직을 유지키로 하고 시내 11곳의 교육지원청에 전문가 자격을 갖춘 현직 경찰관을 파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또 경찰서마다 '학교폭력안전팀'을 만들어 피해신고 창구를 다양화하고 피해학생 구제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했으나 학교별로 담당 경찰관을 정해 교내를 순찰하거나 상주토록 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경남진해 경찰서는 과자 값을 건네며 상습적으로 초등학생들의 몸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 씨를 구속 했다. 경찰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방법으로 이 학교 1~4학년 여학생 9명에게 모두 22차례나 성추행한 것이다. 김 씨 해군에서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1999년 원사로 퇴역 후 아파트관리사 등으로 일하다 2009년부터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해 왔다. 월80만원을 받고 매일 오전 8시 출근해 오후 4까지 등·학교 길 교통정리와, 숙직실에서 교내 CCTV 감시등을 봄 학교 폭력에 예방활동을 해왔다. 김씨의 채용은 경남교육청이 주관 하여 성범죄등 전과도 없어 채용과정에서 걸리지 않았었다 (중앙일보

2012:20면).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자나 근로자는 성범죄 조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는 이규정에서 예외다. 대부분이 성실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 중 성범죄 전과자 등 부적격자 포함됐었을 가는 성이 있는 것이다. 교육부 배움터지킴이는 취업자나 근로자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 성격이 강해 성범죄 조회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중앙일보 2012:20면)

스쿨폴리스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2005년 이후 줄곧 제기됐으며, 그 결과 지킴이나 보안관 형태로 공감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이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원봉사자 중심이어서 전문성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예방과 처벌을 위한 주변 조직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학생이 쉽고 편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가해학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격리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다. 새로 만든 지원교육청의 전문창구와 경찰서의 안전팀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미국 뉴욕이나 LA 등에선 경찰관이 학교에 상주하면서 순찰과 검문을 한다지만 우리의 경우엔 거기까지 국민의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력이 교정에 들어간다고 지킴과 같은 은밀한 폭력을 제어할 순 없다. 대다수 학생의 인권과 교사들의 역할 문제도 무시해선 안 된다. 학교폭력은 교육과 예방이 선행돼야 하며 그것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주도해야 한다. 학교 안에선 기존의 '지킴이나 보안관'에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 더욱 활성화하고, 경찰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스쿨폴리스는 학교 밖에서 이들과 연계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옳다.

2) 학교안전교사 제도 방안

학교 안전을 위해 현재 서울 실시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학교라는 공공장소에서 단순한 학교안전만을 위한 범죄예방으로 순찰활동과 지도를 할 수 있으나, 실력에 의해 강제력을 발생시키는 곤란하다 행정상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계약에 의해 강제력을 부여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보안관은 민간인이 학교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적 근거 없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실력을 행사할 경우 이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학교와 민간의 참여는

단순히 양 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학교안전의 주체로서 준수법권을 가질 수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 코레일 '철도공안 9급 공무원'과 같은 특별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자격을 정부에서 개입하여 법 제정을 통한 자격시험을 통한 학교보안교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학교보안교사자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등교사 자격²⁾을 기본 골격으로 첫째, 경찰·경호 관련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경찰·경호 관련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경찰·경호과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둘째, 대학에 설치하는 경찰 경호과를 졸업 및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 셋째, 전국 경찰 경호관련학과에 학교보안관련하여 교직과목을 개설하여 초중등교사 자격제도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준교사 제도 전문상담교사³⁾ 보건교사 배치와 같이 학교안전교사의 조건으로 첫째, 대학 및 산업대학의 경찰·경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및 안전, 보안 학점을 취득한 사람, 둘째, 경찰경호관련 대학원 또는 교육 과학 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경찰·경호과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경호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 학교안전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전문대학의 경찰·경호과를 졸업 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 학점을 취득하고 학교안전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법제화를 구축해야 할 것 이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CPTED) 방안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거시적인 접근에 해당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CPTED'라고 함은 적절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환경의 방어적설계 통하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여

2) 제21조(교직원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사는 정교사(1,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 2급), 사서교사(1, 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 2급) 및 영양교사(1, 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 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②제1항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좁으므로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전감을 유지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 범죄예방 전략을 의미 한다 (이정덕·임유석 2011:228).

CPTED 범죄예방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과는 다르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전통적인 범죄예방 전략이 넓은 범주에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범죄예방정책이라면 CPTED는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CPTED의 도입목적이다 (이형복 2011:137).

1) 미국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학교 출입구와 건물 출입구의 개수를 제한하며 정해진 공간을 통과하도록 설계하고 사용빈도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불필한 주출입구는 수시로 차단할 수 있도록 셔터와 같은 설비를 배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학교시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쇠사슬과 시건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의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어적 공간 요소를 보면 잠재적 공격자의 퇴로를 제한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제시하고 있어 단순히 예방차원을 벗어나 범인 검거에도 CPTED가 활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2) 호주 Canberra

호주 Canberra 시에서 제시된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crime prevention and urban design resource manual"은 주민시설, 주차장, 자전거 도로, 버스 정류장 등 사회 인프라 시설 전반에 걸쳐 CPTED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하다. 조명의 경우 구체적으로 50lux이상의 조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최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내 학교시설 설계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야간 자율학습을 도입하고 있는 중등학교의 경우 안전통행로를 지정하고 적합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학교 폭력예방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창호 계획은 학교 폭력 및 비행이 심각한 학교시설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요소이다. 그러나 에너지 사용과 같은 타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치 또한 각 실의 사용 인원, 빈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재료는 침입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로 대부분 단층 유리가 되어있는 국내 학교시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은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 있어 교사 등에 식재를 배치하는 국내 학교시설에 매우 유용하다.

3) 한국 서울시

2006년도부터 CCTV가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를 기준으로 전국학교의 50%이상 에 5대 이상의 CCTV가 보급되었다. 그러나 활용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향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현재의 고정방식의 카메라와 함께 회전식 카메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력 운영과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금속 감지의 경우는 폭탄, 총기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국내 범죄 유형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성이 낮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시설들의 도입을 위한 확장성을 고려한 학교 설계가 요구된다. 또한, 출구통제기술 중 출입자 인식기술의 국내 도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최근의 범죄 유형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요소이며 범죄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으로 4개년에 걸쳐 초등학교 580개교 총 2,977대의 CCTV설치로 학교 안전 기본 망 구축에 이어,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어린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및 폭력 없는 학교 구현하고자 하였다.

〈표 2〉 서울시 초등학교 CCTV 설치 사업

구분	소개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대상	580개교	145개교	221개교	184개교	30개교
설치대수	2977대	701대	858대	900대	518대
취약지역	2479(83%)	666(95%)	847(99%)	850(94%)	116(22%)
스쿨존	498(17%)	35(5%)	11(1%)	50(6%)	402(78)
소요예산	238억 원	60억 원	60억 원	60억 원	58억 원

참조: 서울시교육청 2012년 기획 감사교육 정보화

학교 및 학교 주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효과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외식조사를 통해보면 CCTV로 대표하는 CPTED와 공식범죄 발생빈도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로는 CCTV의 설치가 학교범죄의 발생을 확실히 줄인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범죄와 지역사회의 범죄가 다소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예방설계적으로 CCTV위 위약 감을 줄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쉬운 CCTV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형복 2011: 139).

문제는 CPTED의 실천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CPTED에 불명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즉 법적 가이드라인 CPTED의 실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규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전문 인력 양성체계 표준, 체계의 표준, 인증요건 표준, 자격인증의 기관 인증체계표준, 심사평가 표준의 법적재정 등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3. 학교안전망 CPTED 법적 제정 방안

국가시설이 아닌 교육 장소에서 무기휴대에 의한 청원경찰중심의 학교안전운영은 적절치 못하며 장기적으로 민간경비 중심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으나 손해배상문제, 학교보안관의 자질 및 역량, 그리고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인성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는 현행 경비업법으로도 쉽게 해결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에도 경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권작용에 대한 범위와 관련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1) 경비업법

경비업법 제1장 총칙 경비업법 제1조 목적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체계적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이다. 제2조 정의 라.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그 밖의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2항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여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도사로 구분한다.

CPTED와 관련된 제 3장 기계경비업무를 살펴보면 제8조 기계경비 업무 대응체

제는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비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오경 보의 방지에서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때에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경비업법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관련하여 경비지도사 선인 배치기준은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 별로 경비원 200인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인씩 선임·배치하되,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기계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다.

과연 위의 경비업법상의 법으로 학교안전에 관한 운영에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2) 학교 보안안전관리 법 제정화 방안

첫째, 학교 공공기관 보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적용범위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법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또한 기관장의 감독 책임 하에 보안시설, CCTV, 조명,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학교 보안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둘째, 학교안전교사 채용이다. 경찰경호 관련학과 대학졸업 및 보안 안전교육과 교직과목 이수자를 준교사로 임용하여, 학교기관의 건축물, 인공구조물, CCTV, 학교 폭력지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 및 보안 업무의 전문 교사를 배치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학교 보안시설 공사법이다.

ㄱ. 보안 시설 설계업.

보안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ㄴ. CPTED 학교 보안 시설공사업.

설계도에 따라 보안시설을 신설, 중설, 개설, 이전 및 정비 하는 영업.

㉔. 학교 보안공사 감리업

보안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보안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 하다.

넷째, 보안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다. 학교 시설과, 유괴 납치, 보안,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CPTED 학교보안 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학교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교보안시설 CPTED 건축허가 등의 동의 법이다. 건축물의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으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⁴⁾에 따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V. 결 론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교육환경 중에서 외면할 수 없고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는 필수적 교육 환경요소이다.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내외에서의 범죄 등으로 보아 학교안전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최근 학부모 여론조사결과에서 학교안전이 최우선 관심사임을 알 수 있듯이 범죄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보안관제도 및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이 정착되기에 앞서 학교안전대책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적극적인 정부 개입으로 정책적인 학교안전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와 그 외 지역의 배움터지킴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

4) 제1조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도 불구하고 빈발하는 학교폭력 및 이동 유괴 성폭행 범죄의 발생으로 알 수 있다.

첫째, 학교 주변의 범죄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학교 건축 계획 단계에서부터 CPTED기법을 반영하여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행정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CPTED의 인증제도와 학교보안 안전관리법 재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제도적 학교안전망 구축 사업인 학교 보안관 사업은 단순한 봉사활동의 개념이 아닌 직업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학교 폭력이나 학교안전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법 개정과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문화된 인력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교안전교사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범죄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안전 CPTED 법적 제정과 물리적적 환경을 조사 후 학교에 실질적으로 CPTED 적용 되었는지,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의 범죄의 두려움 파악 수량적 의식조사 등의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은영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III): 학교CPTED 가이드라인, 학교시설물 및 관리 실태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은영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III): 학교 및 학교주변 CPTED 효과성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경찰청(2012), “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 공배완·안황권(2009), “초등학교 안전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282.
- 김상운(2012),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4권 2호: 25-47.
- 김원중(2011), “학교안전에 관한 경찰의 역할 검토”,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177-196.
- 김태복(2011), “학교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제7권 제4호: 305-315.
- 김태진(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3호:169-192.
- 대검찰청(2011), 「범죄분석」
- 박운기(2012), “통합적 학교안전망 구축 방안”, 「경찰연구논집」 제9호: 27-51.
- 서울시교육청(2012), “학교안전교육-기획, 감사, 교육, 정보화, 마을공동체”
- 이정덕·임유석(2011), “민간경비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기법의 상호의존성에 관한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제29호 223-249
- 이영욱·송수복(2011), “학교 내의 보안관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159-176.
- 이형복(2011), “CPIED를 통한 대전의 범죄예방 정책방안II: 주거지역 및 초등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 정재준(2012), “미국의 학교폭력 방지대책”, 「서울대학교법학」 제53권 제1호: 529-570.
- 최종술(2006), “한국적 School Police 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1호 : 131-161.
- 학교안전공제회(2010), “학교안전사고 예방 수행 방안에 관한 연구”
- 홍서아(2010),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원 석사논문」

2. 국외문헌

Mike Gane, Durkheim's, "theory of viole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ume 58, Issue Supplement s1, (August 2006) : pp41-42.

Michel Foucault, Discipline and Punish, Translation copyright © 1997 by Alan Sheridan, Second Vintage Books edition (May 1995), pp104-105.

Hall-Long, B. A, Schell, K, Corrigan, V(2001), "Youth Safety education and injury prevention program", Pediatric Nursing, Vo.27, No3, pp.141-146.

3. 기타

경찰청브리핑(2012/3.8), “경찰, 학교폭력 실태 진단 위한 전국 설문조사 실시”.

경찰청브리핑(2012/4/23), “학교폭력 근절대책,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 보도자료(2012/3/21),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및 주5일 수업제 추진상황 점검결과”

국민일보(2010/08/30), “배움터 지킴이와 CCTV는 무얼 했나”, 31면

국민일보(2011/11/23), “끊이지 않는 교내 성범죄 학교가 무서워요-학교지킴이·보안관제
있으나마나”, 11면

중앙일보(2012/07/31), “배움터 지킴이 8000명 명예 먹칠한 60대” 20면

중앙일보(2012/07/31), “허점 드러낸 제도 자원봉사자 성격 지킴이는 성범죄 조회 대상서
제외”, 20면

한국일보(2012/01/05), “학교경찰, 교외의 든든한 울타리 되게”, 35면.

한국일보(2011/03/12), “학교보안관 있었지만 초등학교에 괴한 침입 복도서 여학생 추행”,
11면.

한국일보(2010/06/11), “학교가 위험하다”, 18면.

【Abstract】

**An Improvement Way of School Safety
Operation Network
– Centering on School Marshal and CPTED –**

Lee Se-Hwan

As a part of school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a system of school marshal in Seoul-si and a project of academy safety guard in other regions are on the way of improvement. But, the crimes in and around the school, occurring frequently, are not solved easily, as this study points out. The effective improvement way of school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 is as followings.

First, to enforce assistant-class school safety teacher system in order to nurture and educate experts in school safety, as a systematic support for strengthening occupational professionalism. Second, to enforce school safety network construction projects for construct circumstances through legal fix of school safety CPTED to make students free from crimes. This study looks into the real status and problem of school safety networks, and suggests system of school safety teacher and a legal enactment of CPTED, as systematic and a planed school safety countermeasure, not temporary.

Key words : school violence, school safety, academy safety guard,
school safety network, CPTED